

---

# 공제기금 불건전채권 업체 채무부담 완화 계획(안)

---

2020. 6

**KBIZ** 중소기업중앙회  
공제기획실 채권관리팀

## □ 목 적

- 최근 ‘신종 코로나19’ 사태에 따른 직·간접적인 피해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조기 경영 안정화 및 정상화를 도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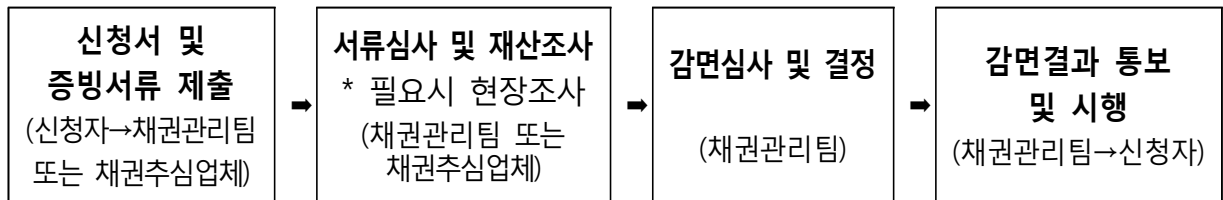
## □ 채무부담 완화 계획(안)

- ① (기본방향) 공제기금 불건전채권 발생업체의 경영사정과 채무자(대표자, 보증인)의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채무를 감면
  - 기본적으로 이자(연체이자 포함), 법적 절차비용을 전액 감면하고,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자의 경우에는 원금도 일부 감면 가능
  - \* 다만, 채무상환 능력 및 실익있는 재산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감면 제외
- ② (감면대상) 불건전채권의 채무자로서 수해 등 천재지변, 고령, 지병, 기초생활수급 대상, 다중채무 등의 사유로 재산실익이 없거나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자
  - \* 다만, 공제기금 가입자의 무분별한 채무감면 요청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감면대상을 시행일 이전 발생한 불건전채권으로 한정
- ③ (감면 조건 및 내용) 감면신청서 및 감면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원금 일부 감면을 원하는 경우는 생계유지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받아야 함
  - ㉠ 재산의 실익이 없으나 현재 생계유지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자
    - 원금을 제외한 이자(연체이자 포함), 법적 절차비용 전액 감면 가능
  - ㉡ 재산의 실익이 없고, 현재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운 자
    - 이자(연체이자 포함)와 법적 절차비용 전액 감면 및 원금의 일부도 감면 가능

④ (감면 처리절차 및 변제) 소정 처리절차에 따라 감면이 확정되어 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업체는 일시 또는 3개월이내에 변제금 납입을 원칙으로 하되, 채무자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변제도 가능

- ㉠ 신청업체 : 본회(채권관리팀) 또는 추심위탁업체에 신청서류와 증빙자료 제출
- ㉡ 본회(채권관리팀) 또는 추심위탁업체 : 1차 서류심사(필요시 현장조사), 2차 신용정보기관 재산조사 실시
- ㉢ 본회(채권관리팀) : 서류심사 및 재산조사를 토대로 감면여부 검토 및 결정(내부결재)
- ㉣ 본회(채권관리팀) : 감면결과 통보 및 감면시행

〈처리절차 흐름도〉



《제출서류》

- ㉠ 지원신청서(붙임 양식)
- ㉡ 증빙서류
  - 천재지변(재산피해사실확인서 등)
  - 지병(병원 진단서, 장애인증명서 등)
  - 기초생활수급 대상(수급자증명서 등)
  - 다중채무(은행채무증명서 등)
  - 기타 재산실익이 없거나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예시 : 재산세 납부실적 등)

□ 운영기간 : 2020. 3. 1 ~ 2020. 12. 31 (10개월간) \* 본회 도착일 기준

## □ 신청시 유의사항

- ㉠ 원금 일부에 대한 감면여부와 감면금액은 본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결정
- ㉡ 기존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와 법적 절차비용이 미상환 중인 채무자는 법적 절차비용만 상환하면 이자 전액 감면 가능
- ㉢ 채무부담완화가 확정되더라도 채무자(보증인)가 약속된 기간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
## □ 신청 및 문의처 (\* 본회가 추심위탁한 채권은 해당 추심업체에 신청)

### ○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획실 채권관리팀

- 전화번호 : 02-2124-4361~4363 / 팩스번호 : 02-761-4870
- 주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(여의도동)  
중소기업중앙회 (우편번호 : 07242)

### ○ 공제기금 불건전채권 추심위탁업체

중앙신용정보	■전화번호 : 02-559-0194/ ■전송번호 : 02-6265-0456
KTB신용정보	■전화번호 : 02-721-6990/ ■전송번호 : 02-721-6992
SGI신용정보	■전화번호 : 02-968-3821/ ■전송번호 : 02-962-0280

[붙임] 채무부담 완화 신청서 양식

<붙임>

## 공제기금 불건전채권 채무부담 완화 신청서

### □ 신청업체 및 신청자 현황

업 체 명		신청자	
업 체 명		신청자명	(인)
대표자명		대표자와의 관계	
사업자번호		연락처(휴대폰)	

\* 신청자는 신청자명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### □ 공제기금 채무액

구 분	원 금	이 자 (연체이자 포함)	기 타	합 계
금 액(원)				

\* 정확한 채무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본회 채권관리팀으로 확인 요망 (☎ 02-2124-4361~3)

### □ 채무감면 요청 사유

\* 수해 등 천재지변, 고령, 지병, 기초생활수급 대상, 다중채무 등의 사유로 재산실익이 없고,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,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#### < 증빙서류 제출 예시 >

천재지변(재산피해사실확인서 등), 지병(병원 진단서, 장애인증명서(주민센터), 기초생활수급 대상(수급자 증명서), 다중채무(은행채무증명서 등), 기타 재산실익이 없거나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예: 재산세 납부실적 등)

본인은 상기와 같이 귀회에 공제기금 불건전채권 채무부담 완화를 신청하며, 귀회의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.

2020년    월    일

중소기업중앙회 귀중